

제2026-77호 2026년 9월 23일(수)	시 보  여수시	시 정 지 표 시민이 주인되는 시민주권도시 기본이 튼튼한 행복도시 미래를 선도하는 경제도시 세계가 찾는 매력도시 모두가 살기 좋은 미래도시
■ 발행인 : 여수시장 ■ 발행소 : 홍보담당관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 659-3023 FAX) 659-5803		

고 시

- 여수시 고시 제2026-285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 고시
- 여수시 고시 제2026-286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 고시
- 여수시 고시 제2026-288호 여수 도시계획시설(산들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여수시 고시 제2026-289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

공 고

- 여수시 공고 제2026-2945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을 위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 공고
- 여수시 공고 제2026-2949호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및 단속 시행 행정예고
- 여수시 공고 제2026-2950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을 위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 공고
- 여수시 공고 제2026-2952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을 위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 공고
- 여수시 공고 제2026-2959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을 위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 공고
- 여수시 공고 제2026-2961호 2026년 신혼부부·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읍·면·동

- 여수시 남면 공고 제2026-24호 2026년 남면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 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 모집(연도 추가)

중부민원출장소

- 여수시 중부민원출장소 고시 제2026-36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 례

- 여수시 조례 제2302호 여수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여수시 조례 제2303호 여수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여수시 조례 제2304호 여수시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여수시 조례 제2305호 여수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 여수시 조례 제2306호 여수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여수시 조례 제2307호 여수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여수시 조례 제2308호 여수시 음식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훈 령

- 여수시 훈령 제440호 여수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규정 일부개정훈령

회 람								
--------	--	--	--	--	--	--	--	--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여수시 고시 제2026-285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7조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허가번호 (최초허가일)	실시계획 승인 수리	시 행 자		사업착수 예 정 일	사업준공 예 정 일	점용·사용 장 소	공사내용
		주 소	성 명				
2025-019 (‘25. 8. 14.)	2026. 9. 23.	여수시 화정면 백야길 10-1	백야자율 관리어업 공동체	‘26. 10. 1.	‘26. 11. 30.	여수시 화정면 백야리 41-4 지선 공유수면	부잔교 및 도교설치

2026. 9. 23.

여 수 시 장

여수시 고시 제2026-286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7조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허가번호 (최초허가일)	실시계획 승인 수리	시 행 자		사업착수 예 정 일	사업준공 예 정 일	점용·사용 장 소	공사내용
		주 소	성 명				
2025-017 (‘25. 6. 30.)	2026. 9. 23.	여수시 돌산읍 돌산로 652	작금자울 공동체	’26. 10. 12.	’26. 11. 11.	여수시 돌산읍 금성리 449-6 지선 공유수면	부잔교 및 도교설치

2026. 9. 23.

여 수 시 장

여수시 고시 제2026-289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허가번호 (허가일)	점용·사용			신청인		허가 기간
	장소	면적(m)	목적	주소	성명	
2026-35 (26. 9. 23.)	여수시 화정면 백야리 41-4 지선 공유수면	1,011.56 (직접)	부잔교 및 도교 설치	여수시 화정면 백야2길 10-1번지	백야자율관리 어업공동체	'26. 9. 23.~ '31. 9. 22.

2026. 9. 23.

여 수 시 장

공유수면 점·사용 승인을 위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 공고

공유수면 점·사용 승인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22.

여 수 시 장

1. 신청개요

신청인	점용·사용 장소	목적	면적	사용기간
여수시청 (섬발전지원과)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5-78번지 지선 공유수면	선착장 보수	124㎡	승인일로부터 15년

2. 공람장소, 공람기간

- 공람장소: 여수시 해양정책과
- 공람기간: 2026. 9. 22. ~ 2026. 10. 6.(15일간)

3. 의견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2026. 9. 22. ~ 2026. 10. 6.(15일간)
- 제출방법: 의견제출서 서식에 맞춰 제출
- 제 출 처: 등기우편(여수시 신월로 648, 4층 해양정책과)
전자우편(akdonglee@korea.kr)
- 담 당 자: 공유수면관리팀 행정9급 이기연

4. 기타 문의사항은 여수시 해양정책과(☎659-3972)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This aerial map shows a coastal region with numerous land parcels. The parcels are labeled with numbers and names in Korean. A red circle highlights a specific area near the water, which is the subject of the text. The labels include:

- 5-21 전
- 5-44 전
- 5-45 전
- 5-74 임
- 5-22 태
- 5-23 전
- 5-41 전
- 5-62 임
- 2-9 임
- 2-1 대
- 2-6 대
- 2-5 대
- 2-4 전
- 2-2 대
- 2-3 대
- 16-11 대
- 5-94 임
- 5-78 대
- 5-33 전
- 5-34 전
- 5-35 전
- 5-36 전
- 5-37 전
- 5-38 전
- 5-39 전
- 5-40 전
- 5-41 전
- 5-42 전
- 5-43 전
- 5-44 전
- 5-45 전
- 5-46 전
- 5-47 전
- 5-48 전
- 5-49 전
- 5-50 전
- 5-51 전
- 5-52 전
- 5-53 전
- 5-54 전
- 5-55 전
- 5-56 전
- 5-57 전
- 5-58 전
- 5-59 전
- 5-60 전
- 5-61 전
- 5-62 임
- 5-63 임
- 5-64 임
- 5-65 임
- 5-66 임
- 5-67 임
- 5-68 임
- 5-69 임
- 5-70 임
- 5-71 임
- 5-72 임
- 5-73 임
- 5-74 임
- 5-75 임
- 5-76 임
- 5-77 임
- 5-78 대
- 5-79 임
- 5-80 임
- 5-81 임
- 5-82 임
- 5-83 임
- 5-84 임
- 5-85 임
- 5-86 임
- 5-87 임
- 5-88 임
- 5-89 임
- 5-90 임
- 5-91 임
- 5-92 임
- 5-93 임
- 5-94 임
- 5-95 임
- 5-96 임
- 5-97 임
- 5-98 임
- 5-99 임
- 5-100 임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의견	
	기타	

「공유수면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여수시장(해양정책과)

유의사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및 단속 시행 행정예고

여수시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및 불법 주정차 단속 시행에 관한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공고)하오니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2일

여 수 시 장

1. 행정예고 내용: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및 단속 시행에 따른 주민 의견 수렴
가.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및 단속시행일자

연번	위 치	구 간	내 용	단속시행일자
1	소로2-192 (소로3-1238 ~ 국동 1082-3번지)	347m (폭원 8m)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2026. 10. 3.
2	소로3-1238 (신월동 188-23번지 ~ 소로2-192호선)	612m (폭원 6m)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2026. 10. 3.
3	소로3-1239 (소로2-192호선 ~ 중로3-24호선)	1,361m (폭원 6m)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2026. 10. 3.

※ 안전신문고 주민신고제 단속과는 별도 운영

나. 세부장소 : 【붙임 1】 참고

2.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예고(공고)기간 : 2026. 9. 22.(화) ~ 10. 2.(금). 11일간
4. 예고(공고)방법 : 여수시 홈페이지(<http://www.yeosu.go.kr>)

5.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 제출기한 내 의견서를 작성하여 여수시 섬발전지원과(☎061-659-397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CCTV 설치 위치,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나. 제출기간: 2026. 9. 22.(화) ~ 10. 2(금) 18:00, 11일간

다. 제출처: 여수시 섬발전지원과 어항시설팀

라. 제출양식: **【붙임 2】** 참고

마. 제출방법: 직접 방문, 우편, 팩스

- 방문/우편: 여수시 신월로 648, 국동임시별관 4층 섬발전지원과(국동) (우)59761

* 우편은 제출기한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함

- 팩스: 061-659-5831 ※ 전송 후 수신여부 확인 전화 요망

바. 문의사항: 여수시 섬발전지원과 어항시설팀(☎061-659-3979)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주정차 금지구역과 지정 및 단속 예정 구간 위치도 1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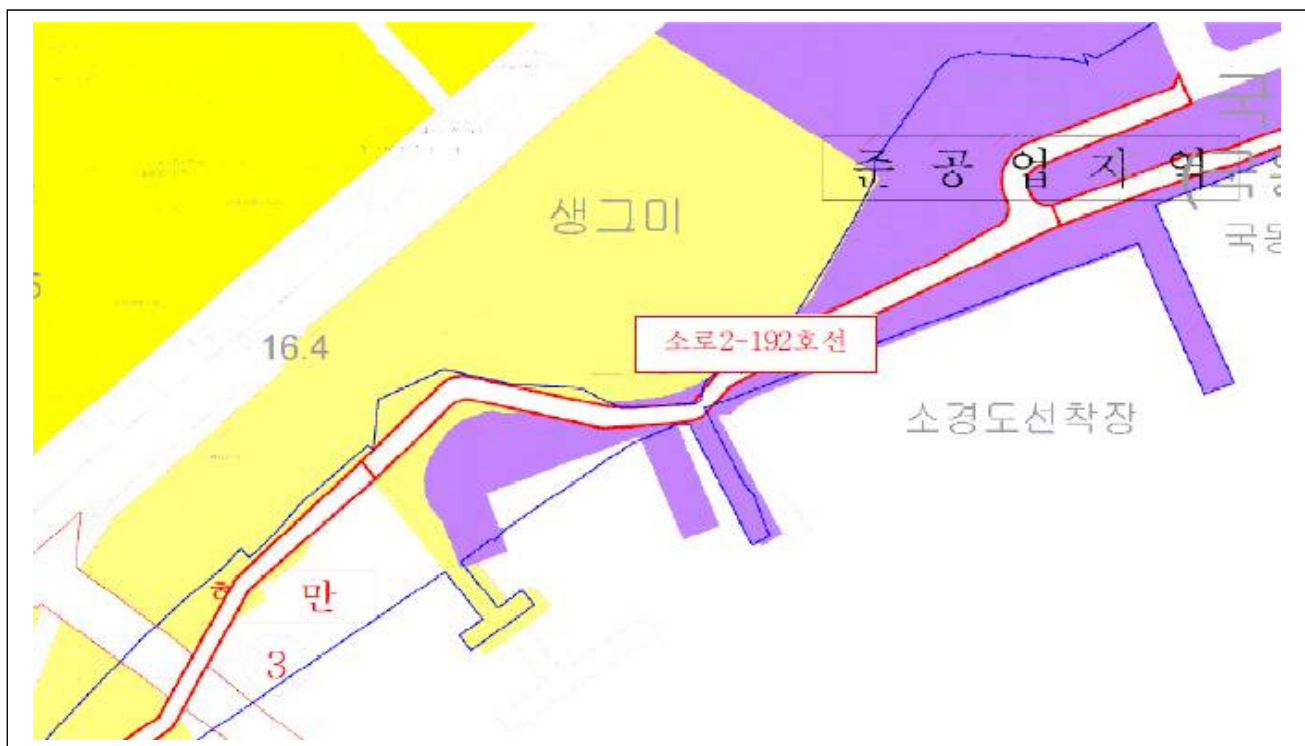
2. 의견 제출서 1부.

【붙임 1】 국동항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위치도

- 국동항(구역지정 전체)



① 국동항(소로2-192)



【붙임 2】 의견 제출서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서					
사 업 명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및 불법 주정차 단속 시행			
의견 제출자		성명 (개인/단체)			
		주소			
		전화번호			
의견 제출 내용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여 수 시 장 귀 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공유수면 점·사용 승인을 위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 공고

공유수면 점·사용 승인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22.

여수시 장

1. 신청개요

신청인	점용·사용 장소	목적	면적	사용기간
여수시청 (섬발전지원과)	여수시 화정면 개도리 1702-1번지 지선 공유수면	선착장 보수	511㎡	승인일로부터 15년

2. 공람장소, 공람기간

- 공람장소: 여수시 해양정책과
- 공람기간: 2026. 9. 22. ~ 2026. 10. 6.(15일간)

3. 의견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2026. 9. 22. ~ 2026. 10. 6.(15일간)
- 제출방법: 의견제출서 서식에 맞춰 제출
- 제 출 처: 등기우편(여수시 신월로 648, 4층 해양정책과)
전자우편(akdonglee@korea.kr)
- 담 당 자: 공유수면관리팀 행정9급 이기연

4. 기타 문의사항은 여수시 해양정책과(☎659-3972)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위치도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의견	
	기타	

「공유수면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여수시장(해양정책과)

유의사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수면 점·사용 승인을 위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 공고

공유수면 점·사용 승인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22.

여수시 장

1. 신청개요

신청인	점용·사용 장소	목적	면적	사용기간
여수시청 (섬발전지원과)	여수시 돌산읍 죽포리 170-26번지 지선 공유수면	선착장 보수	840㎡	승인일로부터 15년

2. 공람장소, 공람기간

- 공람장소: 여수시 해양정책과
- 공람기간: 2026. 9. 22. ~ 2026. 10. 6.(15일간)

3. 의견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2026. 9. 22. ~ 2026. 10. 6.(15일간)
- 제출방법: 의견제출서 서식에 맞춰 제출
- 제 출 처: 등기우편(여수시 신월로 648, 4층 해양정책과)
전자우편(akdonglee@korea.kr)
- 담 당 자: 공유수면관리팀 행정9급 이기연

4. 기타 문의사항은 여수시 해양정책과(☎659-3972)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illegible]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의견	
	기타	

「공유수면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여수시장(해양정책과)

유의사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수면 점·사용 승인을 위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 공고

공유수면 점·사용 승인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23.

여수시 장

1. 신청개요

신청인	점용·사용 장소	목적	면적	사용기간
여수시청 (섬발전지원과)	여수시 돌산읍 금봉리 872-31번지 지선 공유수면	방파제 가각부 확장	47㎡	승인일로부터 15년

2. 공람장소, 공람기간

- 공람장소: 여수시 해양정책과
- 공람기간: 2026. 9. 23. ~ 2026. 10. 7.(15일간)

3. 의견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2026. 9. 23. ~ 2026. 10. 7.(15일간)
- 제출방법: 의견제출서 서식에 맞춰 제출
- 제 출 처: 등기우편(여수시 신월로 648, 4층 해양정책과)
전자우편(akdonglee@korea.kr)
- 담 당 자: 공유수면관리팀 행정9급 이기연

4. 기타 문의사항은 여수시 해양정책과(☎659-3972)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위치도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의견	
	기타	

「공유수면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여수시장(해양정책과)

유의사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신혼부부·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기선정자 지원금 신청 및 신규 대상자 모집 공고

여수시는 신혼부부 및 청년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 및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6년 「신혼부부·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2023~2025년 기선정자 지원금 지급 신청 안내 및 2026년 신규 대상자를 모집하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년 9월 23일

여 수 시 장

I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6년 신혼부부·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26. 10. ~ 12.

○ 사 업 량 : 580가구 내외(기 선정 380, 신규 선정 200)

※ '26년 신규 지원 사업량은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 사 업 비 : 1,000백만원(시비 100%)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18~45세로 전세대출을 받아 여수시 거주(예정)중
이면서 아래의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무주택자

○ 지원내용 및 지원기간

	2023~2024년 기 선정	2025 ~ 2026년
지원내용	실제 이자납부액 기준 월 최대 15만원	본인의무부담금리 최소 연 1.0%이상 범위 내 실제 이자납부액 기준 월 최대 30만원
지원기간	최대 60개월	최대 60개월

II 신청 대상

1. [2023~2025년 선정자] 지원제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지원 자격 유지

내 용	비 고(기신청자)
■ 부부 중 한명이라도 여수시 외의 주소로 이전(전출)한 경우	■ 전출일자가 포함된 달까지 지급
■ 전세 계약을 해지하였거나, 주택을 구입한 경우(분양권 포함)	■ 전세계약 완료 달까지 지급 ■ 주택 등기를 접수한 달까지 지급
■ 전세자금 대출금 상환을 완료한 경우	■ 대출금 상환을 완료한 달까지 지급
■ 이혼 등의 사유로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
■ 정부 및 지자체 주거 관련 유사 사업 대상자가 된 경우	
■ 지원기간 중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으로 대출 받은 경우	
■ 그 밖에 지원해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지원금 전액 환수
■ 사업 신청 서류가 허위·중요사항 누락 등으로 가입자 선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등 기타 환수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신청자 중 연장을 하지 아니하였다가 재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2026년 신규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하며, 2026년 신규 지원 자격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2026년 신규 신청기준에 따라 잔여 지원기간 및 금액을 지원함.

2. [2026년 신규 지원자] 신청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구원: 본인, 배우자, 자녀

- (주 소) 신청일 기준 가구원*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여수시 해당 주택 이거나 타시군구에서 3개월 이내 여수시 해당 주택 전입 예정자
- (주택기준)
- 여수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단 자녀2명 이상가정의 경우 면적 제한 없음)
 - 임대차계약서 상 전세 계약 시작일 2024. 1. 1. ~ 2026. 9. 30. 사이

○ (무 주 택)

- 신청일 기준 가구원* 모두 전국 무주택(분양권 포함)
-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무주택으로 대출 심사가 완료되었더라도, 본 사업의 무주택 기준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함
(예) 집 3개월 이내 매도하기로 하고 대출 완료 받은 경우 신청일 기준 1주택이므로 대상자 아님
- 국토교통부의 주택전산망 조회 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되었다도 신청일 기준 해당주택을 처분한 것이 공부상 입증되거나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면 무주택으로 간주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

- ①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의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사용승인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85㎡이하의 단독주택
 -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⑤ 20㎡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 ⑥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⑦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⑧ 문화재로 지정된 주택

○ (사업대상)

- 신청일 기준 대출용도가 주거자금, 전세자금 등 전세 목적이 명시*된 대출 상품의 대출을 받아 아래의 대상 자격을 충족하는 18~45세

* 신용대출자금으로 받아 전세금 용도로 사용했다하더라도 '신용일반대출 용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금융거래확인서 상 대출 실행일이 2024. 1. 1. ~ 2026. 9. 30. 사이

구 분			대 상 자 격
기혼 청년 (120명)	무자녀 (60명)	신혼부부 (최대 20만원/ 24개월)	▶ 혼인신고일 7년 이내(2019. 1. 1.이후) ▶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예비 신혼부부 (최대 20만원/ 24개월)	▶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 ▶ 예비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유자녀 (60명)	한자녀가정 (최대 23만원/ 36개월)	▶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미성년 자녀 1명 *혼인기간 제한 없음 ⇒ 기본 + 아이키움 우대(월 3만 원)
		다자녀가정 (최대 30만원/ 60개월)	▶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하 ▶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혼인기간, 주택면적제한 없음 ⇒ 기본 + 아이키움 우대(2명: 6만, 3명이상: 10만)
		한부모가정 (최대 30만원/ 60개월)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2명 이상 주택면적제한 없음 ▶ 미성년 자녀 1명 이상, 법정 이혼 한쪽 부모와 같은 주민등록 ⇒ 기본 + 아이키움 우대(1명3만 2명 6만 3명이상 10만)
미혼 청년 (80명)	취업준비생 (최대 20만원/ 24개월)		▶ 미취업자: 부모합산 소득 6천만원 이하 - 미취업자는 한 번도 취업 경험이 없는 자를 의미함 ▶ 단기근로자: 본인 연 소득 1,500만원 이하 - 단기근로자는 12개월 미만 비정규직을 의미함
	사회초년생 (최대 20만원/ 24개월)		▶ 첫 취업(창업) 후 근로(사업)기간이 5년 미만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독신근로자 (최대 20만원/ 24개월)		▶ 첫 취업(창업) 후 근로(사업)기간이 5년 이상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신청자가 예산을 초과할 경우 각 조건 별로 배점표(붙임 참고)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

※ 해당 조건의 신청자 미달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공고 후 추가모집 할 수 있음

3. 지원 제외 대상

- 가. 신청자, 배우자, 자녀가 주택 또는 건물 소유자(분양권 포함)
- 나. 매도인 또는 임대인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
- 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주거급여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관련 공공지원 주택 사업 대상자
 - 국민(영구)임대, LH매입(전세)임대, 행복 주택, 전세 임대 주택, 기존 주택 전세 임대, 사회주택, 공공지원 임대주택 등
- 마. 국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지원 대상자
 - 보건복지부 주거지원사업, 전남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전라남도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등
- 바. 주택 소유자(본인 및 배우자), 해당 주택을 주거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 본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III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1. 신청기간 및 방법

가. 신청기간

- (신규) 2026. 10. 1.(목) ~ 10. 30.(금)
- (기선정자) 2026. 11. 2.(월) ~ 11. 30.(월)

※ 모집 인원 미달 시, 신규 추가모집 : 2026. 11. 16.(월) ~ 11. 30.(월)

- 나. 신청자 : 주택계약자 본인(혹은 배우자) 직접 신청이 원칙
 - 배우자 방문 시 주택계약자 신분증 및 배우자 신분증 각각 구비 후 내방
 - 주택 계약자 본인(혹은 배우자) 방문이 어려운 경우, 위임장 및 위임 관련 서류 제출

〈위임장 제출 시 첨부서류〉

- ① 신분증(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원본)
- ② 신청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시 '수임자'는 '접수 대리인 성명'을 기재하고, 발급용도 '일반용'

다. 접 수 처 :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라. 신청방법 : 평일 근무시간 내(09:00~18:00) 방문 신청(우편, 팩스 접수 불가)

마. 제출서류 : 붙임 참고

2. 지원내용

	2023~2024년 기 선정	2025~2026년 선정
지원내용	실제 이자납부액 기준 월 최대 15만원	본인의무부담금리 최소 연 1.0%이상 범위 내 실제 이자납부액 기준 월 최대 30만원 (기본20만원+아이키움우대)
지원기간	최대 60개월	최대 60개월 (기본24개월+아이키움우대)

가. 2023~2024년 기 선정자: **최초 선정 당시 공고에 따른 기간 및 금액 지원**

나. 2025~2026년 선정자

- 본인 의무 부담 금리 최소 연 1.0% 이상 범위 내 실제 이자 납부액 기준
기본 월 최대 20만원 + 자녀 1명 3만원, 2명 6만원, 3명이상 10만원

$$\text{월지원액} = \min\left(\frac{\text{대출금액} \times (\text{실제연이자율} - \text{본인최소부담연이자율})}{12}, \text{자격별월최대지원한도}\right)$$

(예1) 대출금 2억원, 대출기간 24개월, 연 이자율 2.5%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

→ 실제 이자 납부액 연 2.5%(월 416,667원) 중 최소 본인 의무 부담 금리 1%(월166,667원)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최대 24개월 월 200,000원 지원

(예2) 대출금 7천만원, 대출기간 24개월, 연 이자율 2.8% 대출을 받은 사회초년생

→ 실제 이자 납부액 연 2.8%(월 163,333원) 중 최소 본인 의무 부담 금리 1%(월58,333원)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최대 24개월 월 105,000원 지원

- **최대 60개월** (기본 24개월 + 자녀 수 별 최대 12 ~ 36개월)

다. 생애 1회 (지원 중단 시 재신청 불가)

3.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로 제출(직인 날인 필수) (열람용 금지)

○ 2026년 신규 신청자 제출서류 (자격 조건 별 구비 서류 상이하니 8쪽 확인)	
1	「신혼부부·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신청서 1부 【서식 1】 - 주택 계약자 본인 혹은 배우자 신청이 원칙 - 신분증 지참(본인 확인용)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서식 3】
3	통장사본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 초본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시 생략 가능 - (등본) 신청자 기준 1부 /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관계 전부공개 - (초본) 세대구성원 기준 각 1부 / 주민등록번호, 과거 5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세대주 관계 전부 공개 - 주민등록상 주소가 가족구성원 모두 여수시 해당주택이어야 함. -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이내 타시군구에서 해당 주택으로 전입 예정인 경우 전입 신고 후 등/초본 추가 제출 필요 (3개월 이내 미 전입신고시 지원금 전액 환수조치)
5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발급
6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발급
7	전세(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8	대상주택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 말소사항 포함
9	금융거래확인서, 거래내역확인서(대출이자 납부내역) 각 1부 - 금융권 대출심사 통과 증명서류 등 (금융기관 직인 날인 필수) - 대출상품명, 대출기간, 인적사항, 대출용도(주택, 임차, 전세), 대출금액, 대출잔액 표기 - 2026년도 대출이자 납부내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10	소득증빙서류 1부 (지원조건별 발급 대상 상이) - 대상년도 : 2025년 - 소득 有 :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 소득 無 : 국세청 사실증명서 - (발급처) 읍면동 주민센터, 세무서, 국세청 홈택스
11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주택) 과세증명서 1부 (지원조건별 발급 대상 상이) - 대상기간 : 2025~2026년/ 대상지 : 전국/ 대상내역 : 재산세(주택), 취득세 과세내역 - 과세사실 없을 경우에도 미과세 증명 제출 필요 - (발급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 전국 단위 세목별 과세 증명서는 인터넷 발급 불가, 인터넷 발급시 주소지 관할 내역만 발급됨 * 전국 단위 재산세(주택) 과세 내역이 없을 경우,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전국 단위 지방세 세목 별 미과세 증명서 발급 가능하며 전국 기준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제출로 대체 가능
12	주택소유확인서(청약홈>청약자격확인>주택소유확인) 1부 (지원조건별 발급 대상 상이)
13	위임장 【서식 4】 제출 - 주택 계약자 또는 배우자가 아닌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 - 위임장,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원본, 신청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조건 별 구비 서류>

	기혼청년(120명)					미혼청년(80명)		
	무자녀(60명)		유자녀(60명)			취업 준비생	사회 초년생	독신 근로자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자녀 가정	다자녀 가정	한부모 가정			
1 신청서	○	○	○	○	○	○	○	○
2 동의서	○	○	○	○	○	○	○	○
3 통장	○	○	○	○	○	○	○	○
4 등·초본 (등본) 신청자 1부 (초본) 구성원 각1부	○	○	○	○	○	○	○	○
5 혼인	○	추후 제출			○	○	○	○
6 가족	○ 부부 각 1부	○ 부부 각 1부	○ 부부 각 1부	○ 부부 각 1부	○	○	○	○
7 임대차	○	○	○	○	○	○	○	○
8 등기부	○	○	○	○	○	○	○	○
9 대출	○	○	○	○	○	○	○	○
10 소득	○ 부부 각 1부	○ 부부 각 1부	○ 부부 각 1부	○ 부부 각 1부	○ 신청자 1부	○ 미취업자 (본인) 사실증명원 (부모) 소득금액 증명원 단기근로자 급여명세서 (통장사본), 단기근로 증빙서류	○ 신청자 1부	○ 신청자 1부
11 지방세	○ 부부 각 1부	○ 부부 각 1부	○ 부부, 자녀 각 1부	○ 부부, 자녀 각 1부	○ 신청자, 자녀 각 1부	○ 신청자 1부	○ 신청자 1부	○ 신청자 1부
12 청약	○ 부부 각 1부	○ 부부 각 1부	○ 부부, 자녀 각 1부	○ 부부, 자녀 각 1부	○ 신청자, 자녀 각 1부	○ 신청자 1부	○ 신청자 1부	○ 신청자 1부
추가		청첩장 혹은 예식장 계약서 등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본인, 부모 각 1부)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1부, 재직증명서 혹은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2023~2025년 선정자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로 제출(직인 날인 필수)

1	「신혼부부·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지원금 지급 신청서 1부 【서식 2】 - 주택 계약자 본인 혹은 배우자 신청이 원칙 - 신분증 지참(본인 확인용)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서식 3】
3	통장사본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 초본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시 생략 가능 - (등본) 신청자 기준 1부 /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관계 전부공개 - (초본) 세대구성원 기준 각 1부 / 주민등록번호, 과거 5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세대주 관계 전부 공개 - 주민등록상 주소가 가족구성원 모두 여수시 해당주택이어야 함.
5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신청자 기준, 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발급
6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신청자 기준, 주민등록번호 포함 발급
7	전세(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8	대상주택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 말소사항 포함
9	금융거래확인서, 거래내역확인서(대출이자 납부내역) 각 1부 - 금융권 대출심사 통과 증명서류 등 (금융기관 직인 날인 필수) - 대출상품명, 대출기간, 인적사항, 대출용도(주택, 임차, 전세), 대출금액, 대출잔액 표기 - 2026년도 대출이자 납부내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10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주택) 과세증명서 1부 (지원조건별 발급 대상 상이) - 대상기간 : 2025~2026년/ 대상지 : 전국/ 대상내역 : 재산세(주택), 취득세 과세내역 - 과세사실 없을 경우에도 미과세 증명 제출 필요 - (발급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 전국 단위 세목별 과세 증명서는 인터넷 발급 불가, 인터넷 발급시 주소지 관할 내역만 발급됨 * 전국 단위 재산세(주택) 과세 내역이 없을 경우,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전국 단위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 발급 가능하며 전국 기준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제출로 대체 가능
11	위임장 【서식 4】 제출 - 주택 계약자 또는 배우자가 아닌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 - 위임장,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원본, 신청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IV 향후 일정

신청서 접수	서류심사 및 대상자 확정	결과 통보 및 지원금 지급
(신규) '26. 10. 1. ~ 10. 30.	'26. 12. 18.(금)까지	'26. 12. 24.(목)까지
(기 선정자) '26. 11. 2 ~ 11. 30.	▶ 자격 및 제외대상 여부 확인 ▶ 신청자가 예산초과 할 경우 각 조건별로 배점표(붙임)를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 통보방법: 개별 통보(문자)	▶ 지원대상자 개별 지급 신청 계좌 입금 ▶ 기 선정자의 경우 2025년 11, 12월 분 이자를 지원받지 못한 가구는 이자납입 내역 첨부하여 추가지원
(※예산 범위 내 추가모집) '26. 11. 16. ~ 11. 30.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V 기타 유의사항

1. 접수된 서류는 모두 반환하지 않습니다.
2.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허위 기재, 연락불능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3.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후에도 신청 제외 대상으로 확인될 때는 선정을 취소합니다.
4. 본 공고사항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사항은 재공고 또는 개별 통보합니다.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여수시청 청년인구정책관(☎061-659-342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1】 - 신규 신청자

「신혼부부·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신청서

○ 기재사항의 허위·누락·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가 부담하므로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문의 : 여수시 청년인구정책관 (☎061-659-3426)

신청 구분	☐ 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 ☐ 한자녀가정 ☐ 다자녀가정(자녀__명) ☐ 한부모가정 ☐ 취업준비생 ☐ 사회초년생 ☐ 독신근로자								
인적 사항	신 청 자	(☐ 남, ☐ 여)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연소득(합산)	금 원				
	여수시 전입일자	년 월 일 (신청자 기준)							
주택 전세 계약 현황	계약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소재지 (주 소)			임차면적	m ²				
	주택형태	☐ 아파트 ☐ 원룸, 오피스텔 ☐ 단독주택 ☐ 기타()							
대출 현황	대출기관								
	대출상품명								
	대출금액	금 원	대출잔액	금 원					
	대출기간	20 . . . ~ 20 . . .							
	월 이 자 납부액	1월	원	2월	원	3월	원	4월	원
		5월	원	6월	원	7월	원	8월	원
		9월	원	10월	원	11월	원		
	청구기간	총 개월 분(2026년 실제 납부 개월 수)							
지원금 지급 계좌	금융기관			예 금 주					
	계좌번호								
	청구금액	2026년 실제 총 본인의무부담금리 최소% 이상 범위 내 실제 이자 납부액(조건별한도상) 금 원							
위 기재사항과 제출된 자료의 내용이 틀림없음과 신청제의 대상 및 해제사유 해당시 환수 조치됨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 2026년 「신혼부부·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신혼부부·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지원금 지급 신청서

☐ 신청자 인적사항 (최초 신청:202_년)

성명		성별	☐ 남 ☐ 여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신청자 구분	☐ 본인 ☐ 배우자		

☐ 주택 전세 대출이자 납부현황

대출기간	20 . . ~ 20 . . (개월)			
납부기간	20 . . ~ 20 . . (개월)			
대출잔액	금 원			
월이자 납부액	2025년 : 원(작년 11,12월분 지원받지 못한 대상자만 작성)			
	1월 원	2월 원	3월 원	4월 원
	5월 원	6월 원	7월 원	8월 원
	9월 원	10월 원	11월 원	
청구금액	금 원			

※ 30만원 초과 시 30만원으로 기재(개인별 이자납부내역 참고)

※※ (2023~2024년) 실제 이자 납부액 기준 월 최대 15만원 * 최대 60개월

※※※ 2025년 11,12월 이자를 지원받지 못한 신청자의 경우 추가 증빙서류 제출 시 지원 가능

☐ 지원금 지급받을 계좌번호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2026년 월 일

위와 같이 「신혼부부·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성명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서식 4】

위임장

위임하는 사 람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위임받는 사람 과 의 관 계		연 락 처	
위임받는 사 람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위임하는 사람 과 의 관 계		연 락 처	

위에서 위임하는 사람은 위임받는 사람에게 「여수시 신혼부부·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 신청에 대한 권한을 위임합니다.

❖ 위임장 제출 시 첨부서류

- ① 신분증(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원본)
- ② 신청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시 수임자는 '접수 대리인 성명'을 기재 하고, 발급 용도는 '여수시 신혼부부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접수 위임용' 으로 기재

2026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참고 경합 시 우선순위 결정 배점표

신혼부부·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우선순위 결정 배점표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① 2026년 기준 소득 금액 합산 (기혼청년-부부합산, 미혼청년-신청자)	가. 3천만원 미만 나. 3천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 다. 4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라. 5천만원 이상 6천만원 미만 마. 6천만원 이상 8천만원 미만 바. 8천만원 이상	8점 6점 4점 2점 1점 0점
② 자녀의 수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민법상 미성년 자녀)	가. 3인 이상 나. 2인 다. 1인 라. 해당없음	6점 5점 3점 0점
③ 신청인 기준 여수시 연속 거주 기간	가. 8년 이상 나. 5년 이상 ~ 8년 미만 다. 3년 이상 ~ 5년 미만 라. 1년 이상 ~ 3년 미만 마. 1년 미만	5점 4점 3점 2점 1점
④ 신청인 기준 사회적 배려 사항 (관련 증빙서류 첨부)	「장애인, 다문화가정,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한부모 가정」 가. 해당시 나. 해당없음	 1점 0점
총 점		

※ 평가항목별 배점을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며, 총 점이 동일시 기준 소득 금액이 낮은 순으로 선정

Q1 기 신청자인 경우 어떻게 되나요?

- ☞ 기 신청자의 경우 고시공고문 2쪽의 지원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원 자격이 유지되며, 2025년도부터 확대되는 기준이 아닌 당초 모집 당시 공고 기준에 따른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당시 공고 기준에 따른 지원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 한하여 2026년 기선정자 지원금 지원이 가능하며, 지원기간이 모두 종료된 경우에는 2026년 신규 신청은 불가합니다. (※생애 1회 지원)

(2023~2024년) 실제 이자 납부액 기준 월 최대 15만원 * 최대 60개월
(2025~2026년) 본인 의무 부담 금리 최소 연 1.0% 이상 범위 내 실제 이자 납부액 기준 월 최대 30만원 * 최대 60개월

- ☞ 기신청자 중 연장을 하지 아니하였다가 재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2026년 신규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하며, 2026년 신규 지원 자격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2026년 신규 신청기준에 따라 잔여 지원기간 및 금액을 지원함.

Q2 기 신청자였는데 자격 요건이 변동되었어요.

- ☞ 최초 선정 당시 신혼부부였으나 현재 자녀가정으로 바뀐 경우 등 자격 요건이 변동된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잔여 개월 수에 한하여 2026년 신규 신청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지원 금액 및 지원 기간은 2026년 신규 대상자 기준으로 변경됩니다.

	2023~2024 선정자	2025~2026 선정자
한자녀	월 최대 15만원/60개월	월 최대 23만원/36개월
두자녀	월 최대 15만원/60개월	월 최대 26만원/48개월
세자녀 이상	월 최대 15만원/60개월	월 최대 30만원/60개월

※ 위 표는 참고용으로 구체적인 실제 지급액은 공고문 6쪽 참고

따라서 자격 요건이 변동된 경우에는 기존 선정 자격 유지 또는 2026년 신규 신청 전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후에는 번복할 수 없으며 자격 요건 변경 신청에 따른 불이익이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이때 지원기간이 모두 종료된 경우에는 2026년 신규 신청은 불가합니다. (생애 1회)

Q3 지원 제외사유에 해당되어 지원 중단이 되었다가, 다시 지원 대상에 해당되면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 지원 제외사유(전출, 전세계약 해지, 주택 매매, 이혼 등)에 해당되어 지원이 중단된 후 다시 지원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신규 신청 및 재신청은 불가하며, 생애 1회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Q4 기존 집 전세계약이 만료(예정)되어 새로 전세 대출을 받아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가게 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기존 주택과 신규 주택 각각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대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자지원은 잔여기간에 따라 기존 및 신규 대출로 구분하여 지원하며, 계약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신규 대출시행일 기준으로 신규 대출 기준으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기신청자는 상기 절차에 따라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신규 신청자의 경우 기존 전세계약 시작일과 대출 실행일이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9월 30일 사이에 해당하면 기존 및 신규 대출로 구분하여 지원됩니다. 단, 신규 신청자의 기존 주택의 계약조건이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규 주택에 대한 지원만 가능합니다.

Q5 선착순 마감인가요? 선정 후 언제쯤 지원금이 지급되나요?

☞ 선착순이 아닌 접수기간 마감 후 최종 접수된 서류를 심사하여 예산 범위 내 우선 배점표에 따라 순위를 결정하고 12월 중 선정 결과 개별 통보 및 지원금 지급 예정입니다.

Q6 ‘본인 의무 부담금리 1.0% 이상’ 이 무슨 뜻인가요?

☞ 이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결과에 따른 것으로, 시에서 전액을 대신 내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연 1.0% 이상의 이자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대출 금리가 3.5%라면 그 중 1.0%는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일부를 시에서 이자지원 형태로 보전합니다.

(예1) 대출금 2억원, 대출기간 24개월, 연 이자율 2.5%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

→ 실제 이자 납부액 연 2.5%(월 416,667원) 중 최소 본인 의무 부담 금리 1%(월166,667원)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최대 24개월 월 200,000원 지원

(예2) 대출금 7천만원, 대출기간 24개월, 연 이자율 2.8% 대출을 받은 사회초년생

→ 실제 이자 납부액 연 2.8%(월 163,333원) 중 최소 본인 의무 부담 금리 1%(월58,333원)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최대 24개월 월 105,000원 지원

Q7 자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 ☞ 지원 금액 및 지원 기간 등이 더욱 확대된 조건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예) 신혼부부이면서 다자녀가정: 다자녀가정으로 신청

Q8 2024. 1. 1. 이전에 시행한 대출이거나 이전에 전세 계약이 시작 된 집을 재연장해서 살고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 ☞ 2024년 1월 1일 이전에 전세계약이 시작되었거나 해당 일자 이전에 전세자금대출이 실행된 경우, 또는 기존 전세계약을 단순 연장하여 거주 중인 경우에는 이자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6년 신규 대상자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9월 30일 사이에 시작된 전세계약 및 실행된 전세자금대출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Q9 자녀가 중간에 태어나거나 가족관계에 새로 추가되면 어떻게 되나요?

- ☞ 지원 기간 중 자녀(태아는 미포함)가 추가될 경우, 등록 신고 후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다음 달부터 변경된 자녀 수 기준으로 추가 지원금이 반영됩니다. (기 선정자의 경우 Q2 참고)

Q10 타시군구에서 전입 예정인데, 주민등록이 아직 여수시가 아닙니다. 신청 가능한가요?

- ☞ 2026년 신규대상자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단, 전입신고일이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여야 하며, 전입 이후 등본 및 초본을 추가로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전입신고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지연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기 지급받은 지원금이 있는 경우 전액 환수 조치됩니다.

Q11 예비 신혼부부인데, 혼인신고 전이라도 신청 가능한가요?

☞ 2026년 신규대상자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단, 혼인신고일이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여야 하며, 신청 시 식장계약서, 청첩장 등 예비 신혼부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혼인신고 이후 혼인관계증명서를 추가로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혼인신고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지연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기 지급받은 지원금이 있는 경우 전액 환수 조치됩니다.

남면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 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 추가 모집 공고연도

2026년 남면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 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남 면 장

1 공고 및 원서접수

가. 공고기간 : 2026. 9. 22.(화) ~ 9. 28.(월) 12:00 / 7일간

나. 신청기간 : 2026. 9. 22.(화) ~ 9. 28.(월) / 7일간(근무시간 내)

다. 접 수 처 : 여수시 남면 내외진길 10(남면) 남면사무소 산업팀 또는 연도중계소

라. 접수방법 : 방문접수

※ 방문접수 : 평일 근무시간에 한함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2 채용 및 근무조건

채용신분	채용분야	채용예정인원	근무기간								
기간제근로자	해양쓰레기 수거 인부	2명	2026. 10월 중 ~ 2026. 11. 30.								
			(약2개월)								
			(09:00 ~ 18:00 / 1일 8시간, 월~금)								
			※예산범위 내에서 근무기간 가감 있음								
			- 지역별 기간별 월별 근로일수 -								
		<table><tr><td>지 역</td><td>근무 인원</td></tr><tr><td>연 도</td><td>4명</td></tr></table>	지 역	근무 인원	연 도	4명	<table><tr><td>지 역</td><td>10월~11월</td></tr><tr><td>연 도</td><td>14일</td></tr></table>	지 역	10월~11월	연 도	14일
지 역	근무 인원										
연 도	4명										
지 역	10월~11월										
연 도	14일										

보수	기타
일 82,560원 (4대보험료 본인부담금 포함)	4대 보험료 본인부담금 포함한 금액이며 보수 기타사항은 「근로기준법」과 「2026년 직접일자리사업 정부·지자체합동 지침」에 따름

※ 교통비 추가 지원 없음

3

직무 기술

주요 업무	○ 해안가 및 유·무인도서 쓰레기 수거 및 운반 등 ○ 해안가 및 부유쓰레기 수거·운반
-------	---

필요 역량	○ (공통역량) - 공고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주소지가 남면으로 되어 있고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 사실이 없어야함. - 만 18세 이상인 신체 건강한 자 ○ (직무역량) - 관내 지리에 능통한 자
-------	--

관련분야 : 해양쓰레기 수거 인부	
응시 자격요건	자격 ○ (공통자격) - 공고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주소지가 남면으로 되어 있고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 사실이 없어야함. - 만 18세 이상인 신체 건강한 자
	경력 ○ 해당없음
	학위 ○ 해당없음
우대요건	○ 취업취약계층 우대 ○ 1톤 트럭 소지자 및 스마트폰 사용 가능자 우대
가산점	○ 해당없음

○ 취업취약계층 우대 상세

- 저소득층 :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 장애인,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 결혼이민자, 여성가장, 성매매 피해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위기청소년,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노숙인

4

응시제한

- 가. 시청 내 공직자 친·인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제출 또는 회피하여 공정한 채용시험을 방해하는 등 비정규직 채용 응시 제한을 받은 자
(해당 응시 일을 기준으로 3년간 응시 제한)

5

심사방법 및 일정

- 가. 1차 심사 : 서류전형(응시자격에 대한 적격여부 서면심사)
- 합격자 발표 : 2026. 9. 28. 전후
- 나. 2차 심사 : 면접시험, 2026. 9. 30.(수) 10:00 예정 * 일정 변동 시 개별 통보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역량 검증
- 면접시험 평정표

평 가 항 목(5개항목)	점 수	비 고
계	50점	
가. 공공업무 수행자로서의 정신자세	상상(10-9점), 중상(7-8점), 중(6-5점), 하중(4-3), 하(1-2점)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상상(10-9점), 중상(7-8점), 중(6-5점), 하중(4-3), 하(1-2점)	
다. 긍정적 가치관 및 대인관계성	상상(10-9점), 중상(7-8점), 중(6-5점), 하중(4-3), 하(1-2점)	
라. 예의 품행 및 성실성	상상(10-9점), 중상(7-8점), 중(6-5점), 하중(4-3), 하(1-2점)	
마. 역량검증	상상(10-9점), 중상(7-8점), 중(6-5점), 하중(4-3), 하(1-2점)	

- ※ 면접시험 시 평가위원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중” 이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중” 이하로 평정한 경우 불합격
- ※ 서류전형 심사점수와 면접 심사기준표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
- 다. 최종합격자 : 2026. 9. 30.(수) 예정 / 홈페이지 공고 및 유·무선 전화 통보
- ※ 일정 변동 시 개별 통보

6

제 출 서 류

- 가. 참여신청서 1부(붙임 양식을 워드 또는 자필로 작성)
- 나. 정보제공 동의서 1부(붙임 양식을 워드 또는 자필로 작성)
- 다. 주민등록초본 1부(주소이력 포함 공고일 이후 발급)
- 라. 1톤 트럭 소유자일 경우 자동차등록증
- 마. 취업취약계층일 경우 확인 서류(해당장에 한함.)

7

기타 유의사항

-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응시자 스스로 기재된 사항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또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나. 접수된 서류의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 다. 최종 합격된 후에라도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채용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정한 채용 선발을 위해 여주시청 내 공직자 친인척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시청 내 공직자 친인척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사항이 있음에도 미제출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해당 채용 합격이 취소됩니다. 또한, 해당 응시일로부터 3년간 여주시 비정규직 채용 응시에 제한됩니다.
- 라.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되 학위 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유효기간이 없는 증빙서류는 공고일 전 기준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접수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구직자의 채용여부 확정된 날의 14일 이후부터 구직자의 요구 시 30일 이내에 반환되며, 반환되지 않은 서류는 6개월 후 파기합니다.
- 마.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바. 본 모집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사. 응시자는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으면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아. 예비합격자를 선발하여 최종합격자의 자진포기, 중도퇴사등 결원이 발생할 경우 차점자 순으로 합격 처리합니다.
-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주시 남면사무소 산업팀(☎ 061-659-1198)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접수번호				(신청일자 : 2026. . .)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유선전화번호	000-000-0000	
이메일주소			무선전화번호		
이력사항	취업취약·연령별 계층 여부	* 저소득층, 장애인, 장기실업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 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성매매피해자, 휴.폐업자, 갱생보호대상자, 여성세대주(가장), 출소 6개월 미만자, 노숙인, 청년층			
	세대주 여부	① 해당 ② 해당없음	세대원수(세대주, 동거인제외)		명
	취업 여부	① 취업 ② 실업 ③ 취업경험 없음	전 직업	회사원, 제조업, 자영업, 서비스업, 공무원, 학생, 농어업, 일용직, 주부, 무직, 기타	
	실업기간	20 . . . ~20 . . .			
근무선호지역		1.	2.	3.	
과거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여부	참여사업명	①	②	③	
	참여기간	20 . . . ~20 . . .	20 . . . ~20 . . .	20 . . . ~20 . . .	

① 본 신청서는 바다환경 지킴이 사업 참여 근로자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참여자의 본인의 심사자료로 활용됩니다.

②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뒷면)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바다환경 지킴이 사업 근로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서명)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바다환경 지킴이 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바다환경 지킴이 사업 근로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항목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무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로자 선정종료시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바다환경 지킴이 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건강보험부과금액, 가입자구분 및 증번호 등 건강보험정보 및 공적연금가입 정보, 가구재산, 고용보험가입 및 실업급여수급정보, 구직활동정보,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바다환경 지킴이 사업 근로자 선정 및 근로자 참여비 지급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유형정보
(가무원)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정보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6개월(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바다환경 지킴이 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바다환경 지킴이 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무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무원) 근로자 선정 심사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근로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신청자 및 가무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관계	1.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
	본인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2026년 월 일

남면장 귀하

< 취업취약 계층 >

- ① 저소득층 :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건강보험료 부과액(납입액) 이하 여부 확인
- ②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확인
- ③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 고용센터,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고용 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한 민간 취업알선 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 ④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발급)
- ⑤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확인
- ⑥ 결혼이민자 : 국적 취득 전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의 F2, F5, F6 비자 여부 확인, 국적 취득 후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 증명서 확인
- ⑦ 성매매피해자 : 성매매피해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 ⑧ 자영업 휴·폐업자 :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관할세무서 등 행정기관에 휴업(폐업)을 신고한 경우로 휴업(폐업)사실증명서 확인
- ⑨ 갱생보호대상자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민간법인 7개소)의 지원 확인서

⑩ 여성가장

구분	첨부서류	
배우자 無	•가족관계등록부 •부모가 근로능력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	
배우자 有	가출·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애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병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기타 가족 생계 부양	통·반장의 확인서(검토)

⑪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⑪ 노숙인 : 관련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

< 연령대별 우대계층 >

○ 청년층 : 참여시작일 기준 만 18세~만34세인 자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9. 23.

여 수 시 장 (인)

1. 도로명주소(부여) 내용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고시일	이동사유	도로명고시일	부여사유	비고
별 지 기 재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부민원출장소 주소정보팀(☎061-659-3355 ~ 3357)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안내시스템(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일 이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3.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업무구분	종전주소 (지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고시(폐지)일	이동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건물번호부여	전남광주동합동별시 여수시 돌산읍 금봉리 1487-6	전남광주동합동별시 여수시 돌산읍 금천해안길 29-1	20200911	건축물신축	20091013	지역 및 위치예측성을 고려	
건물번호부여	전남광주동합동별시 여수시 소라면 죽림리 1248	전남광주동합동별시 여수시 소라면 도원로 76	20200911	건축물신축	20091013	지역 및 위치예측성을 고려	

제257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여수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9 월 23 일

여 수 시 장 서예하



여수시 조례 제2302호

붙임 여수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의원은 1개의 연구단체에만 가입할 수 있으며, 유사한 연구주제를 가지거나 친목 성격의 단체는 구성할 수 없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의원연구단체는 연구 활동에 따라 정책지원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12월15일”을 “11월30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원연구단체의 구성) ① (생 략) ② <u>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 에 중복하여 가입할 수 있다.</u>	제3조(의원연구단체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u>의원은 1개의 연구단체에만 가입할 수 있으며, 유사한 연구 주제를 가지거나 친목 성격의 단체는 구성할 수 없다.</u>
제4조(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등) ① · ② (생 략) ③ <u>연구단체의 등록과 운영 등 에 관한 총괄사무는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이 담당한다.</u>	제4조(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의원연구단체는 연구 활동에 따라 정책지원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u>
제6조(연구활동 기간) ① 연구단 체의 연구활동 기간은 연구단체 등록승인일로부터 같은 해 <u>12월 15일까지</u> 로 한다. 다만, 연구의 목적상 활동기간의 연장이 불가 피하다고 인정될 경우, 3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운영 심사위원회의 의결로써 연 장 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6조(연구활동 기간) ① ----- ----- ----- --- <u>11월 30일</u> -----. ----- ----- ----- ----- ----- ----- -----.
	② (현행과 같음)

제257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여수시의회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9 월 23 일

여 수 시 장 서 매복



여수시 조례 제2303호

붙임 여수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토론회 등에 대한 주관 지원주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가 제안하는 소관 현안사항에 대한 토론회 등 : 소속 상임위원회

2. 의원이 제안하는 현안사항에 대한 토론회 등 : 정책지원팀

제5조제4항 후단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단, 유관기관·단체 등의 토론회에 단순 후원이나 참여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토론회 등 개최 승인 신청서

행 사 명			
목 적			
일시/장소		참석인원	
기대효과			
소요예산			
☐ 추진 계획			

「여수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의원 : (인)

여수시의회의장 귀하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0개 정 안
제5조(관리 및 지원) ① (생 략)	제5조(관리 및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세부적인 행정 지원은 토론 회 등의 주제와 관련된 소관 상 임위원회의 협조를 받아, 토론 회 등의 개최 의원의 소속 상임 위원회에서 추진한다.	② 토론회 등에 대한 주관 지원 주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가 제안하는 소관 현 안사항에 대한 토론회 등 : 소 속 상임위원회 2. 의원이 제안하는 현안사항에 대한 토론회 등 : 정책지원팀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의원이 개최하는 토론회 등 의 개최 소요 경비는 의원 1인 당 연 200만원 이내로 한다.	④ ----- ----- ----- ----- ----- 단, 유관기관·단체 등의 토론회에 단순 후원이나 참여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257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9 월 23 일

여 수 시 장 서 매익



여수시 조례 제2304호

붙임 여수시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위원장 및 부위원장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 중 제3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각각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위원의 제척·회피)”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안건의 심의 전에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8조제4호 중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제27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사유”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을 “사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촉직 위원의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되어 재직 중인 위원에 대하여 제26조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일에 시작하는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6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26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u><신설></u>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위원장 및 부위원장으로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촉직 위원-----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u><신설></u>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u><삭제></u>
<u><신설></u>	⑤ 위촉직 위원 중 제3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각각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27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생략)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할 경우 스스로 해당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제2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 3. (생략)

4.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현행과 같음)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안건의 심의 전에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8조(위원의 해촉) -----

-----.

1. ~ 3. (현행과 같음)

4. 제27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사유-----

5. ----- 사임 -----

--

제257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사회복지
협의회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9 월 23 일

여 수 시 장 서명



여수시 조례 제2305호

붙임 여수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1부

여수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라 설치된 여수시 사회복지협의회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수시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지원하고, 협의회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사업) 시장은 협의회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건의
2.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조정
3.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사회복지자원과의 연계·협력
4.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사업

제4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협의회 운영 및 제3조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제4조 따라 지원한 협회회의 운영 및 사업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협의회에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57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9 월 23 일

여 수 시 장 서재하



여수시 조례 제2306호

붙임 여수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에 부대하여 이루어지는 상행위로서 도시공원의 관리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법 제4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상행위를 허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1조의2(금지행위) (생략) <신설>	제41조의2(금지행위) ① (현행 제 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u>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 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주최·주관하 는 행사에 부대하여 이루어지는 상행위로서 도시공원의 관리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에 는 법 제4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상행위를 허용할 수 있다.</u>

제257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9 월 23 일

여 수 시 장 서 매복



여수시 조례 제2307호

붙임 여수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보호하는데”를 “보호하는 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자를”을 “사람을”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자동제세 동기(AED)”란”을 ““(자동심장충격기)”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한다.

제4조제1호 및 제2호 중 “자동제세동기”를 각각 “자동심장충격기”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자동제세동기의 설치 및 관리)”를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및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에서는 “설치권장 시설””을 “조에서 “설치권장시설””로, “자동제세동기”를 “자동심장충격기”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이용시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설치권장시설에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시설의 이용인원, 응급의료 접근성, 기존 설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관리책임자의

지정, 정기점검 및 사용교육 등 자동심장충격기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조건으로 정할 수 있다.

제6조 중 “자동제세동기”를 “시민의 응급의료 대응역량 강화를 위하여 시민 및 자동심장충격기”로, “관리자에게 제4조제2호에 따른 응급처치에 관한”을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심폐소생술 등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2.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사용 및 관리에 관한 교육·홍보
3. 그 밖에 응급의료와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홍보

제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관계 법령, 조례 및 재정지원의 목적과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때는”을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아니 할”을 “아니할”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응급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u>보호하는데</u>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u>보호하는 데</u>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 -----.
1.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分娩),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이 있는 자를 말한다.	1. ----- ----- ----- ----- ----- ----- ----- ----- <u>사람</u> -----.
2. ~ 4.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5. “ <u>자동제세동기(AED)</u> ”란 급	5. “ <u>자동심장충격기</u> ”란 -----

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6. “응급차량”이란 법 제44조의 2의 구급차등의 운용신고를 하고, 법 제46조의 기준을 갖춘 구급차를 말한다.

제4조(응급의료의 지원) 시장은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제세동기의 구입 및 설치비용
2. 자동제세동기의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홍보

3. 4. (생략)

제5조(자동제세동기의 설치 및 관리) ① 시장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가 있는 시설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는 “설치권장 시설”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자동제세동기의 설

-----.

<삭 제>

제4조(응급의료의 지원) -----

-----.

1. 자동심장충격기-----

2. 자동심장충격기-----

3. 4. (현행과 같음)

제5조(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및 관리) ① -----

----- 조에서
“설치권장시설”-----
----- 자동심장충격기---

치를 권장할 수 있다.

1. ~ 4. (생략)

<신설>

5. (생략)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동제세동기 설치권장 시설에 대하여 그 설치비용을 지원할 경우에는 성능이 입증된 자동제세동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이를 관리하는 책임자를 두고, 정기점검 및 사용교육을 실시하게 하거나 그 사용설명서를 갖추어 두고 응급상황 발생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6조(응급처치에 관한 교육·홍보) 시장은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에게 제4조 제2호에 따른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

1. ~ 4. (현행과 같음)

5.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이용시설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설치권장시설에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시설의 이용인원, 응급의료 접근성, 기존 설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관리책임자의 지정, 정기점검 및 사용교육 등 자동심장충격기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조건으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응급처치에 관한 교육·홍보) ----- 시민의 응급의료 대응역량 강화를 위하여 시민 및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

1. 심폐소생술 등 구조 및 응급

<신 설>

<신 설>

제7조(재정지원 받은 응급의료기관
의 장의 의무) 제4조에 따라
응급의료 재정지원을 받은 응급
의료기관의 장(이하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생 략)

2. 관계법령 및 조례, 시장의 지
시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
야 한다.

제8조(재정지원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는 재정
지원한 기관에 대해서 재정지원
을 취소 또는 회수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의
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
할 때

2. 3. (생 략)

처치에 관한 교육

2.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사
용 및 관리에 관한 교육·홍
보

3. 그 밖에 응급의료와 관련하
여 필요한 교육 및 홍보

제7조(재정지원 받은 응급의료기
관의 장의 의무) -----

-----.

1. (현행과 같음)

2. 관계 법령, 조례 및 재정지원
의 목적과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재정지원 취소 등) -----

----- 경우에는 -

-----.

1. -----
----- 아니
할 -----
--

2. 3. (현행과 같음)

제257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음식특화
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9 월 23 일

여 수 시 장 서 매학



여수시 조례 제2308호

붙임 여수시 음식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부

여수시 음식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외식산업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음식특화 거리를 지정 및 조성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인”이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의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직접 음식점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상인조직”이란 상권이 형성된 일정 지역에서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율적으로 설립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에 따라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 신고를 하고 영업하는 업소를 말한다.
4. “음식특화거리”란 일정 지역에 유사한 종류의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는 거리로서 지역의 특색 있는 음식문화를 형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장이 지정한 거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음식특화거리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4조(상인조직의 책무) 상인조직은 음식특화거리 조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시의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음식특화거리 지원계획) 시장은 음식특화거리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음식특화거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음식특화거리 활성화 기본방향
2. 음식특화거리 지원 사업의 목표 및 추진계획
3. 음식특화거리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음식특화거리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음식특화거리 지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관내의 일정지역을 음식특화거리로 지정할 수 있다.

1.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상권일 것
2. 거리환경, 음식점 및 부대시설의 적정성
3. 거리의 역사성, 주민의 이용도, 발전가능성 및 경제적 파급효과 등

② 음식특화거리 지정을 신청하려는 상인조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일정 지역에 소재한 음식점이 15개 이상일 것(아파트 상가는 제외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음식

점 수에 관한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2. 번영회, 상인회 등 상인 간 의견 수렴을 위한 자치기구 또는 상인조직이 구성되어 있을 것.

3. 음식특화거리 지정에 대하여 해당 지역 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것.

③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의 방법·절차 및 제출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지정절차) ① 시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음식특화거리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6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한 후 제8조에 따른 음식특화거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② 음식특화거리 지정에 관한 세부 심의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신청을 받은 예정거리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된 거리인 경우 그 목적이 상충하지 않는 범위에서 중복하여 음식특화거리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정요건 충족여부 및 사실 확인을 위하여 현지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특화거리를 지정한 때에는 음식특화거리 지정서를 교부하고 그 지정내용을 시보나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해야 한다.

제8조(심의위원회) ① 음식특화거리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음식특화거리 심의위원회를 둔다.

1. 음식특화거리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음식특화거리의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여수시 위생업소 지원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여수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

제9조(지정취소) ① 시장은 음식특화거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음식특화거리로서 기능을 상실한 경우
2. 위생·품질 등의 관리 소홀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음식특화거리로서의 관리가 현저히 미흡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음식특화거리 지정을 받은 경우

② 시장은 음식특화거리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해야 한다.

제10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음식특화거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객 접근성 향상을 위한 공동시설 및 고객 편의시설의 설치·개선

사업. 다만, 개별 음식점의 시설개선은 제외한다.

2.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사업
3. 음식특화거리 활성화를 위한 축제 및 홍보 사업
4. 음식점 경영·서비스 개선 등을 위한 컨설팅 사업
5. 상인을 대상으로 하는 위생·서비스 등 교육 사업
6. 그 밖에 음식특화거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상인조직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상인조직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 지원 규모 및 지원 조건을 정할 수 있다.

1. 사업의 필요성 및 공공성
2. 음식특화거리의 특성 및 사업의 내용
3. 사업의 기대효과 및 지속가능성
4. 상인조직의 사업수행 능력 및 자부담 능력
5. 다른 사업과의 중복지원 여부

④ 제2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지원사업의 관리)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한 사업비의 운

용 및 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상인조직 또는 지원사업에 참여하거나 지원을 받은 상인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추진 상황

2. 지원 사업비의 적정 사용 여부

3. 그 밖에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원사업의 운영 및 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하여 점검·지도하게 할 수 있으며 상인조직 또는 지원사업에 참여하거나 지원을 받은 상인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실태 점검 결과 지원받은 사업비를 목적 외 사용하거나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변경,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시장이 지정하여 운영 중인 음식특화거리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여수시 위생업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여수시 음식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여수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2026년 9월 21 일

여수시장 서명하



여수시 훈령 제440호

붙임 여수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규정 1부.

여수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규정

일부개정훈령

여수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지도자는”을 “감독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코치는 단장의 지시를 받아 감독의 훈련계획에 따라 선수의 훈련, 경기지도, 체력관리를 담당하며, 감독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제2항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6조”를 “제27조”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별지 제2호 서식]을, 선수는 [별지 제3호 서식]을 사용하여”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고, 선수는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만,”을 “다만, 군복무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2조 앞의 “제3장 보수”를 삭제한다.

제18조 앞의 “제4장 복무”를 삭제한다.

제24조 앞의 “제5장 신분보장”을 삭제한다.

제29조 앞의 “제6장 상벌”을 삭제한다.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를 각각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로 하고, 제27조 및 제28조를 각각 제28조 및 제29조로 하며, 제26조를 제27조로 하고, 제24조 및 제25조를 각각 제25조 및 제26조로 하며,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를 각각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로 하고,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로 하며, 제11조를 제12조로 하고,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계약체결 전 정보제공) ① 여수시청은 단원과 계약 체결 시 계약에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 관련 사전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기간
2. 계약금 및 연봉
3. 복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종전의 제11조)제1항 중 “[별지 제5호 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6호 서식]”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

제13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보수

제14조(종전의 제1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선수는 훈련 또는 경기 중 발생한 부상으로 경기 출전이 제한되는 경우 이를 공상으로 볼 수 있으며, 공상 여부는 사실관계에 대한 자체

조사를 거쳐 결정한다. 공상으로 인정된 선수의 연봉을 산정할 때에는 부상 발생 직전 1년간의 경기실적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다.

제19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복무

제19조(종전의 제18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상호 존중의 의무 : 단원은 공식 문서 및 행사 등에서 각자의 직책에 맞는 정식 호칭을 사용한다.

제21조(종전의 제20조)제2항 중 “[별지 제7호 서식]”을 “[별지 제7호 서식]”으로 한다.

제24조(종전의 제23조)제7항을 삭제한다.

제4장에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입소자의 의무) ① 입소자는 합숙소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해 유지·관리하고 단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합숙소 이용자는 [별표 8]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단장은 퇴소 사유 발생 시 입소를 제한하거나 퇴소를 명할 수 있다.

③ 입소자는 합숙소 시설 및 공용용품을 훼손·분실한 경우 이를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해야 한다.

제25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신분보장

제26조(종전의 제25조) 제2항 단서 중 “제26조제1항”을 “제27조”로 한다.

제26조의2를 제27조의2로 한다.

제28조(중전의 제27조)제1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시장은 단원에게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이때, 제2호의 휴직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단원이 3개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부상으로 치료를 요하는 경우

2. 단원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등 법정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④ 단원의 휴직기간에 보수의 70퍼센트를 지급한다. 다만, 공상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최대 6개월까지 보수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중전의 제28조)제2항 중 “[별지 제8호 서식]”을 “[별지 제8호 서식]”으로 한다.

제30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상벌

제32조(중전의 제31조)제1항 중 “**과면, 해임**”을 “**해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6항) 중 “**등급조정**”을 “**등급 조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7항) 중 “파면 또는 해임된”을 “해고된”으로 한다.

② 해고는 근로계약을 해지한다.

④ 감봉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한도로 보수를 감하고 다음연도 등급조정 시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없다.

별표를 1부터 8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하고, 별지 3호서식을 삭제하며, 별지 5호서식부터 별지 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계약·임용된 단원은 이 규정에 따라 계약·임용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지도자 및 선수의 임용 기준(제8조 관련)

1. 자격요건

구 분	자 격 요 건	비고
지도자 (감독 및 코치)	○ 선수경력 6년 이상 또는 국제경기대회 입상자 ○ 지도경력 3년 이상인 자 ○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선 수	○ 선수 경력 3년 이상인 자 ○ 대한체육회에 선수로 등록된 자	

2.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 체육단체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8)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혹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9)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자
- 10) 징계로 해당 체육단체에서 영구제명을 받은 자
- 1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 행위를 하였거나 가담하였던 자(선수 및 지도자에 한함)로서 그 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정도가 매우 중한 경우

3. 임용 구비서류

- 1) 입단계약서 1부
- 2) 이력서 1부
- 3) 명함판 사진 2매
- 4) 주민등록 등본 1통
- 5) 경기실적 증명서 1부(중앙경기단체 발행)
- 6)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 이적동의서)
- 7) 건강진단서 1부(종합병원)
- 8)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부
- 9) 경기지도자 자격증 사본 및 경기지도실적 증명서 (지도자에 한함)

4. 임용 방법 : 공개모집 - 서류심사 - 시장 임용

[별표 2]

등급산정기준 및 연봉액 기준표(제13조 관련)

1. 지도자

특급	A급	B급
• 올림픽 3위 이내 입상경력 • 세계선수권 1위 입상경력	• 세계선수권 2~3위 입상경력 • 아시안게임 3위 이내 입상경력 • 국제 및 전국대회 1위 지도실적 3회 이상 (최근 5년)	• 전국체육대회 3위 이내 지도실적 • 전국규모대회 상위 지도실적
6,500~7,500만원	5,500~6,500만원	4,500~5,500만원

2. 선수

등 급		산정기준	연봉액 (천원)	비고
특급	1	올림픽 1위	100,000	
	2	올림픽 2·3위	70,000	
	3	아시안게임 1위 또는 세계선수권 1위 또는 취득점수 65점 이상	65,000	
	4	취득점수 56점 이상	56,000	
A급	1	아시안게임 2·3위 또는 세계선수권 2·3위 취득점수 52점 이상	51,000	
	2	전국체전 1위 또는 기타 국제대회 1위 또는 취득점수 46점 이상	49,000	
	3	취득점수 40점 이상	46,000	
B급	1	전국체전 2위 또는 기타 국제대회 2위 취득점수 36점 이상	45,000	
	2	전국체전 3위 또는 기타 국제대회 3위 또는 취득점수 32점 이상	43,000	
	3	취득점수 26점 이상	41,000	
C급	1	취득점수 22점 이상	39,000	
	2	취득점수 18점 이상	37,000	
	3	취득점수 13점 이상	35,000	
D급	1	취득점수 10점 이상	33,000	
	2	취득점수 6점 이상	31,000	
	3	취득점수 5점 이하	30,000	

※ 위 기준과 별도로 예산상황을 고려하여 연봉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고졸 출신 신규 임용 선수의 점수 산정은 취득점수의 2/3을 적용한다.

[별표 3]

훈련비 지급기준표(제13조 관련)

(단위 : 천원)

계	급식비	간식비	목욕비	비고
450	300	100	50	

[별표 4]

점수산정 기준표(제14조 관련)

구 분	1위	2위	3위	4위	5~8위	9~16위	비고
올림픽	특급			25점	20점		국가대표선수 20점가산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대회에 출전한 선수에 한함)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 대회	특급	25점	20점	15점	10점		
전국체전 기타국제 대회	20점	18점	15점	10점	8점	5점	
전국규모 대회	10점	8점	6점				

- ※1. 연간 입상실적 중 상위 5개 성적을 점수로 환산하여 등급 적용
2. 단체전은 입상한 성적의 100분의 50만 반영
3. 해당연도 기간은 전년 12월 1일부터 현년 11월 30일까지로 환산
4. 전국체전, 기타국제대회 4위~8위와 9~16위는 개인종목 성적만 적용
5. 단장 및 지도자는 종목별로 각 6점 이내에서 가점 또는 감점할 수 있음

[별표 5]

운동용품 지급 품목(제23조 관련)

(단위: 명, 벌, 켈레)

구분	인원	방한복	땀복	츄리닝	운동화	가방	유니폼	타이즈	하복	비고
요트	7	1	1	1	2	1	1	—	1	
육상	8	1	1	1	2	1	1	1	1	
롤러	9	1	1	1	2	1	1	1	1	
유도	8	1	1	1	2	1	2 (청·백 지급)	1	1	

[별표 6]

포상금 지급기준표(제30조 관련)

(단위 : 천원)

구 분		금 (1위)	은 (2위)	동 (3위)	비고
올림픽		10,000	7,000	5,000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		5,000	3,000	2,000	
단 체 전	전국체육대회 기타 국제대회 전국규모대회	1,000	700	500	
전국체육대회		300	200	100	
전국규모대회		200	150	100	

※ 전국규모 대회는 메달수당을 인정하는 대회로 한정.

[별표 7]

단원의 징계양정 기준(제31조 관련)

1. 직장운동경기부 및 대회 운영에 관련한 금품수수, 횡령·배임, 회계부정, 직권남용, 직무태만 등 비위 사건
2. 체육 관련 입학비리 및 채용비리
3. 폭력·성폭력(「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을 포함한다) 및 「남녀고용평등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른 집단따돌림
4. 승부조작 및 불법도박
5. 훈련 기간 중 음주운전, 음주소란 행위
6. 대회 부정 출전·참가, 대회진행 방해 등 각종 대회 중에 발생한 대회 질서 문란 행위
7. 제18조에 따른 단원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8. 월 3일 이상 사전 통보 없이 무단으로 훈련에 불참한 경우
9. 기타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건

구분	양 정 기 준
견책	○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감봉	○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견책처분을 받은 후 다시 견책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정직	○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감봉처분을 받은 후 다시 감봉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고	○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정직처분을 받은 후 다시 정직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표 8]

합숙소 운영 기준(제24조의2 관련)

1. 제한 행위

1. 합숙소의 건물 용도 및 구조를 변경하는 행위
2. 합숙소의 비품을 잃어버리거나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3. 음주, 추태, 소란, 고성방가 등 품위를 해치는 행위
4. 성희롱, 성폭력, 폭언, 폭행 등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5. 합숙소 내 선수들의 행동 자유권을 침해하는 행위
6. 사적 용무를 타인에게 떠넘기는 행위

2. 퇴소 사유

1.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2. 본인이 퇴소 의사를 표시할 때
3. 그 밖에 합숙소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별지 제1호서식]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제9조 관련)

본인은 여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원(상용직 근로자)으로 최종 임용하기 전 다음과 같은 임용 결격사유가 부존재함을 확인합니다.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 체육단체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8)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혹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9)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자
- 10) 징계로 해당 체육단체에서 영구제명을 받은 자
- 1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 행위를 하였거나 가담하였던 자(선수 및 지도자에 한함)로서 그 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정도가 매우 중한 경우

이상의 임용 결격사유가 없음을 명확히 하며 만일 고의 또는 과실로 임용 결격사유가 있음이 추후 확인될 경우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고 계약해지 및 민·형사상 책임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약자 :

(서명)

여 수 시 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재 직 증 명 서(제12조 관련)

인적 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재직 사항	소 속			
	직 위			
	기 간	. . . 부터 . . . 까지	(	년 월)
용도				

위와 같이 재직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여 수 시 장 [인]

[별지 제6호서식]

경 력 증 명 서(제12조 관련)

인적 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경력 사항	근무기간			직 위	근무부서	
	부터	까지				
근무 연한	년 월		최종 직위 • 직급			
퇴직 사유						
상벌 사항	포상			징계		
	연월일	종류	시행청	연월일	종류	처분청
용도						

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여 수 시 장 [인]

[별지 제7호서식]

직장운동경기부 훈련일지(제21조 관련)

【 팀】	결	주 무	팀 장	총감독
	재			

훈련일자	년 월 일		날씨	
훈련장소				
참여인원	참 여	명	불 참	명
	불참사유			
훈 련 내 용				
오 전		오 후		
시 간	훈 련 내 용		시 간	훈 련 내 용
특 기 사 항				

[별지 제8호서식]

이 적 동 의 서(제29조 관련)

인적 사항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	
	주 소				
경력 사항	근무기간		종 목	직 위	근무부서
	부 터	까 지			
근무기간					
퇴직사유					
용 도					

위와 같이 우리시에 근무한 000 선수의 00기관으로의 이적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여 수 시 장 [인]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임무) ① ~ ③ (생략)	제3조(임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지도자</u> 는 단장의 지시를 받아 선수의 발굴·육성과 훈련·대회참가, 체력관리 등 지도업무를 수행한다.	④ <u>감독</u> 은 ----- ----- ----- -----.
<신설>	⑤ <u>코치는 단장의 지시를 받아 감독의 훈련계획에 따라 선수의 훈련, 경기지도, 체력관리를 담당하며, 감독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u>
⑤ (생략)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제9조(결격사유) ① (생략)	제9조(결격사유) ① (현행과 같음)
② 경기부의 단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의 확인을 위하여 <u>[별지 제1호 서식]</u> 에 따른 결격사유 부존재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 ----- ----- <u>[별지 제1호 서식]</u> ----- -----.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결격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u>제26조</u> 에 따른 직권면직 등 제재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 <u>제27조</u> ----- ----- -----.

제10조(입단계약의 체결) ① (생략)

② 지도자 및 선수와 여수시청의 계약은 “근로계약”으로 하고, 지도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선수는 [별지 제3호 서식]을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계약체결 시 계약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계약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2. (생략)

④ ⑤ (생략)

<신설>

제10조(입단계약의 체결) ① (현행과 같음)

② -----

-----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고, 선수는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에 따른 ---.

③ -----
-----.
다만, 군복무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

1. 2. (현행과 같음)

④ ⑤ (현행과 같음)

제11조(계약체결 전 정보제공) ①
여수시청은 단원과 계약 체결 시 계약에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 관련 사전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기간

2. 계약금 및 연봉

3. 복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재직증명 및 경력증명서의 발급) ① 시장은 재직 중인 단원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퇴직한 단원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한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장 보수

<신 설>

제12조 (생 략)

제13조(선수의 등급 조정) ① ~

③ (생 략)

<신 설>

제14조 ~ 제17조 (생 략)

제4장 복무

제12조(재직증명 및 경력증명서의 발급) ① -----

----- [별지 제5호서식]-----

-----.

② -----

[별지 제6호서식]-----

-----.

<삭 제>

제3장 보수

제13조 (현행 제12조와 같음)

제14조(선수의 등급 조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선수는 훈련 또는 경기 중 발생한 부상으로 경기 출전이 제한되는 경우 이를 공상으로 볼 수 있으며, 공상 여부는 사실관계에 대한 자체조사를 거쳐 결정한다. 공상으로 인정된 선수의 연봉을 산정할 때에는 부상 발생 직전 1년간의 경기실적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다.

제15조 ~ 제18조 (현행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와 같음)

<삭 제>

<신 설>

제18조(단원의 의무) ①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
행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신 설>

4. (생 략)

제19조 (생 략)

제20조(훈련계획 수립 등) ① (생
략)

② 지도자는 [별지 제7호 서식]
에 따른 훈련일지를 작성하여
갖춰놓아야 한다.

③ (생 략)

제21조 · 제22조 (생 략)

제23조(합숙소운영) ① ~ ⑥ (생
략)

⑦ 합숙소 이용자는 [별표 8]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
며, 단장은 퇴소 사유 발생 시
입소를 제한하거나 퇴소를 명할
수 있다. <중전의 제6항에서 이
동 2023. 11. 7.>

제4장 복무

제19조(단원의 의무) -----

-----.

1. ~ 3. (현행과 같음)

4. 상호 존중의 의무 : 단원은
공식 문서 및 행사 등에서 각
자의 직책에 맞는 정식 호칭
을 사용한다.

5. (현행 제4호와 같음)

제20조 (현행 제19조와 같음)

제21조(훈련계획 수립 등) ① (현
행과 같음)

② ----- [별지 제7호서식]--

-----.

③ (현행과 같음)

제22조 · 제23조 (현행 제21조 및
제22조와 같음)

제24조(합숙소운영) ① ~ ⑥ (현
행과 같음)

<삭 제>

<신 설>

제5장 신분보장

<신 설>

제24조 (생략)

제25조(의원면직) ① (생략)

② 시장은 단원의 사직원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직을 면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의2(입소자의 의무) ① 입소자는 합숙소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 유지·관리하고 단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합숙소 이용자는 [별표 8]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
며, 단장은 퇴소 사유 발생 시
입소를 제한하거나 퇴소를 명할
수 있다.

③ 입소자는 합숙소 시설 및 공용용품을 훼손·분실한 경우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해야 한다.

<삭 제>

제5장 신분보장

제25조 (현행 제24조와 같음)

제26조(의원면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27조

제26조 · 제26조의2 (생략)

제27조(휴직) ① 단원이 3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휴직을 원하면 시장은 휴직을 명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④ 단원의 휴직기간에 월지급액의 70퍼센트를 지급한다.

제28조(이적 동의) ① (생략)

② 시장은 이적 동의 시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이적동의서

제27조 · 제27조의2 (현행 제26조 및 제26조의2와 같음)

제28조(휴직) ①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시장은 단원에게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이때, 제2호의 휴직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단원이 3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부상으로 치료를 요하는 경우

2. 단원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육아 휴직, 가족돌봄휴직 등 법정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단원의 휴직기간에 보수의 70퍼센트를 지급한다. 다만, 공상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최대 6개월까지 보수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이적 동의) ① (현행과 같음)

② ----- [별지 제8호서식]-----

를 작성 발급할 수 있다.

제6장 상벌

<신 설>

제29조 · 제30조 (생 략)

제31조(징계의 종류와 효력) ①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② 파면은 퇴직금의 2분의 1을
감한다.

③ 해임은 퇴직금의 4분의 1을
감한다.

<신 설>

④ (생 략)

⑤ 감봉은 3개월간 보수의 3분
의 1을 감하고 다음연도 등급
조정 시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없다.

⑥ 견책은 다음연도 등급조정
시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없다.

-----.

<삭 제>

제6장 상벌

제30조 · 제31조 (현행 제29조 및
제30조와 같음)

제32조(징계의 종류와 효력) ① -

----- 해고-----
-----.

② 해고는 근로계약을 해지한
다.

<삭 제>

④ 감봉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
금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
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의 10분
의 1을 한도로 보수를 감하고
다음연도 등급 조정 시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없다.

③ (현행 제4항과 같음)

<삭 제>

⑤ ----- 등급 조정
-----.

⑦ 파면 또는 해임된 단원은 재
입단할 수 없다.

⑥ 해고된 -----
-----.